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2024. 05.

하동군
도시과

목 차

I. 공모 지침	1
1. 설계공모 개요	2
2. 공모 일정 및 방법	3
3. 공모안 제출 및 도서작성 지침	7
4. 작품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9
5. 제출작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	12
6. 공모 관련 지침	13
7. 당선 이후 조건	13
II. 설계 지침	15
1. 계획 개요	16
2. 설계 지침	18
III. 서식	24

I. 공모 지침

1. 설계공모 개요

1.1. 공모의 배경 및 목적

- 아이같이 보급자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아이가 있는 청년 가족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를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 및 양질의 주거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1.2. 공모(사업)의 개요

1) 공모(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칭	아이같이 보급자리 조성사업	
대지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60-2, 360-3, 360-8, 360-15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행 및 주관기관	하동군	
공모(사업) 범위	주요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대지면적	1,240.00㎡
	건축규모	연면적 2,142.86㎡(허용범위±5% 이내)
	건폐율/용적율	법정 80%이하 / 800%이하
규모	층수	주변 시설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안
	주차장	법정규모 이상
예정 공사비	약 81억원 (부가세포함)	
예정 설계비	360,900,000원 (부가세포함)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추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부가세 포함
- ※ 예정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계획 비용(손해배상공제보험, VAT 포함), 자문·심사 등 행정 절차 자료작성,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설계, 현황측량, 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등 업무 비용 포함
- ※ 설계의도구현, 설계VE, 인증수수료 발주기관 부담

2) 공모기관 및 담당자

- ① 시행·주관기관 : 하동군
- ② 공모 홈페이지 : <https://공모전.kr>
- ③ 공모 담당자
 - 발주기관 : 하동군 / 도시과 도시건축(055-880-6963)
 - 공모관리팀 : 담장너머 (0507-1353-7567) / 이메일 (damjangneomeo@naver.com)

- ※ 참가등록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

본 설계 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토부 고시 제 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일반설계공모로 진행된다.

2.2. 공모 추진 일정

구분	추진 일정(안)	비고	
공모 공고	2024. 05. 30.	나라장터 및 하등군청 홈페이지	
참가 등록	~ 2024. 06. 11. 16:00	공모 홈페이지	
현장 설명회	2024. 06. 11. 14:00	사업부지 내에서 시행	
질의 기간	접수	2024. 06. 12.	홈페이지 접수
	회신	2024. 06. 14.	홈페이지 공고
작품접수	2024. 07. 15.	홈페이지 제출	
작품 심사	기술검토	2024. 07. 17.	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 검토
	본 심사	2024. 07. 19.	당선자 및 입상자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4. 07. 26.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일정 변경시 개별통보
- ※ 참가등록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1)” 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1)” 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이후 계약완료시까지 기계·통신 및 전기·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을 하여 설계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입찰 참여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공동이행시) 및 분담이행 각 1부, 협정서에 대표자(1인)을 명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계약 이후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입찰 절차와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단독으로 응모신청 후 공동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 과 “공동으로 응모신청 등록 후 단독으로 작품 접수하는 것” 은 불가능함.

2.4. 응모제한

- 응모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응모 신청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부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응모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제안서 접수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2.5. 설계공모 참가 등록

- 1) 등록기간 : 2024. 05. 30.(목) ~ 06. 11.(화) 16:00까지
- 2) 참가등록 : 홈페이지 접수 (<https://공모전.kr>)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함
*그 외의 방법(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는 불가하다.

2.6. 참가 등록 서류

-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 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응모일 경우)[서식 2]
- 3)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3, 4]
- 4)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도급 또는 공동대표일 경우)[서식 5]
- 5) 설계공모 참여신청서[서식 6]
-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 7]
- 7)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서식 8]
- 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9]
- 9) 설계설명서
- 10)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 참가 시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 1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증 사본 1부.
- 12) 법인등기부 등록(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같음하며,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 서류는 순서대로 정렬하여 하나의 PDF로 결합하여 제출

2.7. 현장설명회

- 1) 일시: 24. 6. 11.(화) 14:00
- 2) 장소: 하동읍 비파리 313번지(하동 어린이공원 앞 구하동역 플랫폼)
- 3) 현장설명회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설명회 미참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8. 질의접수

- 1) 질의서 접수기간: 2024. 06. 10.(월) 10:00 ~ 6. 12.(수) 16:00까지
- 2) 질의 회신기간 : 2024. 06. 14.(금)
- 3)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공모전.kr>)를 통해서만 질의 가능하다.
- 4)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공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 5) 유의사항
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

의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 ②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 ③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질의를 받지 않는다.

3. 공모안 제출 및 도서작성 지침

3.1. 공모안 제출

- 1) 제출기간 : 2024. 07. 15.(금) 10:00 ~ 17:00까지 (시간 외 제출 불가)
- 2) 공모 홈페이지(https://공모전.kr)를 통해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 3) 제출서류 : 아래 [표3]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제출서류는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4) 제출 도서 및 서류

제출목록	서식목록
①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서식7]
② 설계도판(A1 세로 2매)	
③ 설계설명서(A4 세로)	[서식제공]
④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⑦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서식8]
⑧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1부	[서식9]
⑨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 공동응모자도 판권 증빙서류 제출
- ※ 외국건축사는 자격증 및 자격취득자신고 확인증,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5) 유의사항

- ① 제출서류를 기간 내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며, 제출시간 이후 시스템상 접수가 안 되므로 제출자 컴퓨터 이상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② 응모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 접수할 수 없음
- ③ 응모작은 응모자별로 1개 작품으로 제한하고 추가나 수정할 수 없음.
- ④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출물의 익명성 및 주의사항

- ①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에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표시가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 ③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④ 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한다.

7) 고유번호 기재방법

- ① 참가자가 임의의 알파벳 1자(업체명의 이니셜 영문 제외)와 아라비아 숫자 2자로 구성하여 기재한다.
- ② 제출 시 제목 및 파일명에 고유번호(Pin)를 표기한다.
-제목:[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 제출]고유번호(Pin)
-설계도판 : 고유번호_panel1.pdf, 고유번호_panel2.pdf, 고유번호_panel_merge.pdf
- ③ 고유번호는 다른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포함할 수 없다.

3.2. 공모안 작성지침

1) 공통사항

- ① 모든 제출도서의 기본 표기는 한국어(일부 영문, 한자 허용)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②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 ③ 규정된 축척이 없을 시 임의로 정하되, 같은 유형의 도면끼리는 통일한다.
- ④ 컬러는 도면을 제외한 조감도, 투시도,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에 표현이 가능하다.
- ⑤ 조감도 및 투시도는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 투명도 등을 표현할 수 있으나 각종 플러그인 프로그램 사용 및 렌더링 표현은 금지한다.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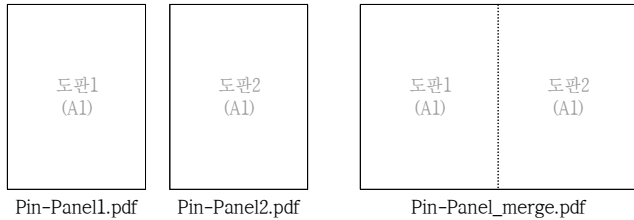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단,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다. 또한, 과도한 포토샵 등을 이용한 리터치를 자제하고 3D 프로그램의 기본 Export 사용을 권장한다.)

- ⑥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은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단, 계획안 모형 사진의 사용은 불가)
- ⑦ 도면(배치도 제외)은 흑백으로 작성하며, 선과 단색의 면으로만 표현 가능하다.(그래데이션 기법의 음영 표현 불가)
- ⑧ 각 제출도서 사이의 설계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2) 설계도판

- ① 도판은 A1(세로 841mm × 가로 594mm) 2매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② 도판은 아래 내용을 담아 구성하며 도면의 축척, 사용 글꼴 및 표현 등은 응모자의 자율에 따른다.
 - 건축개요
 - 조감도 및 투시도 (전체 3컷 이내, 컬러 및 재료 표현 가능)
 - 배치도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도면 수량은 자율, 축척은 자유롭게 하되 같은 축척 사용을 권장)
- ※ 각 도면 축척을 확인할 수 있는 스케일, 방위를 반드시 기입할 것.
- 프로그램 구성 및 동선 다이어그램
(자유 형식으로 각 기능을 연결하고 배치한 의도를 알기 쉽게 표현)
 - 설계도판은 도판별 파일 각 1개, 합쳐진 파일 1개로 총 3개 파일을 제출한다.(아래참조)



3) 설계설명서

- ① 설계설명서는 A4(가로 210mm × 세로 297mm)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② 설계설명서의 내용과 순서는 첨부된 서식의 순서를 따르며 PDF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 ③ 설계설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총 단면 6쪽 이내로 한다. 설계소요 400~1,000자 내외)

4) 주의사항

- ①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할 수 있다.
- ② 도판 및 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처리(점수제) 및 불이익(투표제)을 줄 수 있다.

4. 작품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4.1. 사전기술검토

- 1)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응모작품에 대한 관계법령, 공모규정 및 지침에 기초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 제출한다

구분	항목	운영 규정
법규 위반	국토 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여부	제출된 모든 작품 대상으로 검토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본 심사 반영 기준 결정
	익명성 위반여부	
지침 위반	예정공사비 초과	
	지질, 규격 및 재분방법 미준수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제출도서 누락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여부 등	

4.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 명단(가나다 순)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심사위원	문철수	두양건축사사무소	
	서정석	(주)무위건축사사무소	
	송인욱	건축사사무소사람인	
	이용의	(주)공감건축사사무소	
	전진곤	건축사사무소신우공감	
예비심사위원	유재만	도원A&C건축사사무소	
	이상훈	다담건축사사무소	

- 3) 심사위원 선정 기준 : 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름

4)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 방법

-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예비심사위원 등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최초 회의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 ③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규정 및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모 작품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심사 규정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응모 작품 심사에 대한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 ④ 예비심사위원은 본 심사위원이 전원 참석할 경우는 참석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부재 시 본심사위원이 된다.
 - ⑤ 심사 시 제출 내용에 대해서 참가자에게 전화로 질의 할 수 있다.
- ※ 참가자는 ‘기피·회피·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서식 8]를 제출할 수 있다.

5) 심사 절차 및 기준

① 심사방법

- 심사 시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 결과인 기술검토서를 확인하여 심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은 현장답사-위원회 운영방식 토의-심사-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 작품토론 및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당선작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심사위원은 당선작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해당 영상으로 심사내용 녹화, 녹취를 대신한다. 심사 평가사유서 및 심사표는 당선작 발표 후 공개한다.

② 작품 평가 기준

- 심사위원회는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받아 토론을 통해 실격 또는 평가 반영을 결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20조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체점제 또는 투표제와 체점제의 혼합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평가분야	중점평가 사항	비고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계획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각 공간별 조닝 계획의 적절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디자인의 독창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입면 디자인 계획의 독창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③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 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회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질의 접수 기간 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대상자의 제척·기피 신청 방법 : 질의응답 접수 기간까지
‘공모운영팀 e-mail(damjangneomeo@naver.com)’로 신청서[서식 9] 접수 (미제출시 기피·제척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5항 제8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4.3.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 ①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 계획, 기본(중간),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4인인 경우 :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 ※ 보상내용은 참가업체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이며, 4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
- ②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 ③ 설계용역의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하등군 제규정에 따르며, 중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 ④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 ⑤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변경의 범위에 따라 발주처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한다.
- ⑥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⑦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②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청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 및 저작권

- ①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5. 제출작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

- 1)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보관한다.
- 2)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당선자는 설계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 4) 설계자가 제출하는 모든 작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5) 당선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반환 통보 후 지정한 기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

6. 공모 관련 지침

-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이 제출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 2)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4) ‘1)’ 항에서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 ① 이 경우 응모등록 접수가 완료된 이후 등록 현황을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재등록 공고한다.
 - ② 재공고기간은 추후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 5)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 6)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발주처에서 설계공모 진행여부 및 설계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7. 당선 이후 조건

7.1. 계약

- 1) 당선자는 하동군과 계약 진행후 협의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이때, 당선자가 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토목분야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설계하여야 한다.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발주처에서 갖는다.

- 3)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와 설계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요구 만료일을 7일 이상 초과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발주처에서는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7.2. 설계 진행

- 1) 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과정별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2) 발주처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의 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3) 당선자는 설계 추진 시 상충되는 부분(면적 증감부분 포함) 발생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 4) 정부의 기본 방침 또는 발주처의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5) 당선자는 발주처의 총사업비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기본설계 이전 예산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포함)
- 6)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설 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과장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계약(자격)을 해지(박탈) 및 행정처분할수 있음

II. 설계 지침

1. 계획 개요

1.1. 계획 범위 및 내용

1) 계획 대상지

- ①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60-2의 3필지



<사업부지 현황>

- ② 사업부지는 하동군 (구)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사업부지 주변으로 하동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구하동역 하동청년타운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 ③ 남측으로 폐철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접한 남측 필지 추후 매입 예정으로 본 사업지와 공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 ④ 북측의 경서대로와 본 사업지간 레벨차이가 있으므로, 현황레벨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부지 현황사진>

- ⑤ 남측으로 전답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멀리 섬진강 너머 무등산과 불암산을 조망 가능하며, 북측으로는 시가지 너머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어 조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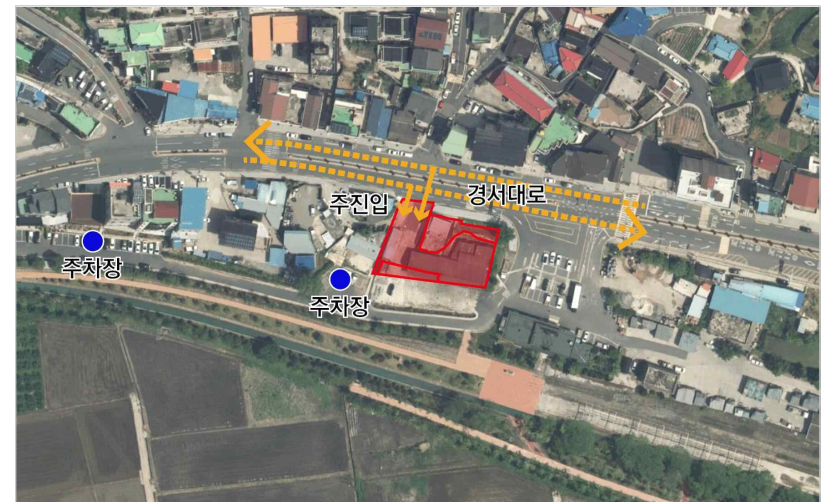


<사업부지 남측조망>



<사업부지 북측조망>

- ⑥ 사업부지 북측 왕복 4차로의 경서대로에서 사업부지로 차량의 주진입이 가능하며, 사업부지 인근으로 노상주차장이 2개소 위치하고 있다.



<차량 주진입 도로와 주변 주차장 현황>

2) 시설규모 기준(안)

- ① 프로그램별 면적표에서 제시된 각 실의 구성 및 공간의 분류는 참고 기준으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통합, 추가 또는 분리,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안이 가능함
- ② 전체 연면적±5% 범위 내 면적은 조정이 가능함

〈세부 시설면적 기준(안)〉

구분	주요시설			면적(㎡)	비고
공공임대주택	세대전용 공간	59Type	20세대	1,294.4	전용면적합계 (벽체공유 포함)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43	
근린생활시설	-			206.8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470	
	기계·전기실 등			128.66	
주차장					주차대수 18대
합 계				2,142.86	(주차장 면적 제외)

3) 계획 내용

- ① 주요시설은 제시된 전용면적을 원칙으로 계획하되 필요실(소요실)의 분할(실의 개수, 분할된 실의 면적배분)은 설계자가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목적에 맞춰 설계(제안) 가능하다.
- ② 하동군 계획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연면적 합계 9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한다.
- ③ 건축물의 배치 및 층수는 법규정안에서 자유롭게 계획 가능하나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 ④ 현재 비어있는 남측 대지(비파리313번지 일부)는 추후 분할 및 매입예정으로 주차장,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추후 활용방안 제안)
- ⑤ 근린생활시설은 본 건축물의 성격에 부합하는 유아동 이용시설 등으로 계획, 제안할 것.(드림스테이션 시설용도와 중복되지 않을 것.)

1.2. 사업 일정 및 공사비

1) 사업 일정

- ①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공휴일 포함)
- ② 사업이 조정과 변경을 위해 협의와 검토에 포함된 시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추정 공사비

- ① 추정공사비는 약 81억원(부가세 포함)이다.
- ②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 설명서에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예산 공사비 개략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인접한 하동청년타운이 파일공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추후 지반조사 등을 통해 적합한 기초형식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침

2.1. 설계의 기본방향

- 1)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아이가 있는 청년 가족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주거공간 공급을 목표로 한다.
- 2)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일조, 조망, 통풍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취지에 맞는 단위세대 유형을 계획하여야 한다.
- 3)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거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공공성 기여에 보탬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4)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 주변의 하동 드림스테이션조성사업, 하동청년타운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5) 사용자에게 복지, 편의시설과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시설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절감을 고려한 지속 가능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6) 각종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법적 의무 인증(BF인증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여야 한다.
- 7) 야외 공간 조성 계획 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휴게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8) 주차장은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하여 설계하되, 수요자의 동선과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상차량 및 서비스 차량이 이용 가능한 동선 및 장애인 주차시설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2. 부문별 설계지침

1) 배치 계획

- ①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배치 및 건축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북측의 경서대로와 사업지간 레벨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③ 인접해 있는 하동드림스테이션,하동청년타운, 폐철로 산책길 등과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④ 건축물과 외부 공간요소(주차장, 조경 등)의 면밀한 규모검토를 토대로 대지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⑤ 보행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차량 진·출입로 계획 시 보행자 동선의 간섭을 최소화 한다.
- ⑥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지역주민의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한다.
- ⑦ 공동주택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을 확보하고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⑧ 현재 비어있는 남측 대지(비파리313번지 일부)는 추후 분할 및 매입예정으로 주차장,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활용방안 설계자 제안)
- ⑨ 사업부지 북쪽 도로(경서대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버스정차 빈도수가 낮으므로 등·하원 공간으로 활용하며 이를 본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평면 계획

- ① 공동주택의 거실은 가급적 남측으로 배치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대상지 남측으로 열린 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②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평면 활용도를 높도록 계획한다.
- ③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세대 구성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단위평면을 제시한다.
- ④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등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창의적인 단위세대 평면과 공용공간을 제시한다.
- ⑤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용공간 계획을 수립하여 Dead space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⑥ 주민공동시설은 거주민들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하고 거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⑦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장벽제거(Barrier-Free)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간서비스의 기본개념으로 계획하고, 모든 공간에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⑧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한다.
- ⑨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공용시설로서 추후 인구변화 추이에 대응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배치와 구조를 고려한다.

■ 실별 세부계획

- 세대전용공간
 - 단위세대의 평면에서 채광이나 전망, 통풍 등이 양호하도록 계획한다.
 - 단위세대는 신혼부부 및 아이가 있는 가구의 구성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절한 실 구성이 되도록 계획하며,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 침실 3, 욕실 2 형태의 평면 구성을 권장한다.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거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인지성이 뛰어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 주변에 조성중인 하동드림스테이션, 청년타운의 육아 관련시설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별첨 참고자료 참조)

○ 근린생활시설

- 거주민과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며 쾌적한 공간을 위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충분한 층고를 설정한다.

○ 공용공간

- 주차입구, 로비, 홀 등은 적절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다.

3) 단면계획

- ① 수직·수평 동선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층별 계획이 되도록 하며 가급적 수직 동선이 연속되도록 계획한다.
- ② 각 실별 기능에 맞는 층고를 산정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한다.
- ③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 ④ 단위세대 천정고는 2.3m 이상을 확보한다.
- ⑤ 건물 층수는 관련 법 규정 안에서 자유롭게 계획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의 경관적인 조화를 고려한다.

4) 입면계획

- ① 외관은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외장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로 설계한다. 또한 하동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외부입면을 계획한다.
- ② 태양광 등의 시설물 설치의 건물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5) 주차계획

- ① 주차장 내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하고, 장애인 주차장 및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② 주차장 내부의 보행동선은 건축물로의 출입이 편리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③ 차량 진출입 및 승하차가 원활하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④ 하동군 주차장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6) 재료마감 계획

- ① 내부 마감재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구성, 유지보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정범위(구간, 간격)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 마감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치수, 재료, 공법 등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표준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 ⑤ 친환경 내부 마감재, 고효율기자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 ⑥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외부로부터 우수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7)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 ① 용도와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과 ‘녹색건축법’ 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의 복도 및 계단실에 충분한 채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③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고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한다.

8) 안전과 피난/방재계획

- ① 범죄예방설계 :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획 하여야 한다.
- ② 피난·방재계획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서 피난·방재계획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내진 안전성의 확보
 - 시설의 재해 시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 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 구조 계산서 및 도면은 구조기술사의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 부문별 설계지침

1) 구조 계획

- ①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력 등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도록 계획한다.
- ② 지진, 태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시 내·외부 마감자재 박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한다.
- ③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적용규정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 기능이 적절한 구조와 하중을 고려한 층별 배치계획

-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경제적인 구조

- 장비 등으로 인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향후 처짐에 대비한 구조검토를 하며 진동에 민감한 바닥구조 등의 경우는 바닥진동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자와 근무자의 안전, 편안함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본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반조사 시 지반의 분류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전단파 속도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계획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신재생에너지 적용시, 본 시설의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으로 설계한다.

2.4. 대상지 관련법규

제출된 설계안은 다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법규
- 『건축법』 및 하위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표준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법령
- 기타 본 건축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법률

Ⅲ. 서식

1. 서식

- <서식 제1호>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서식 제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서식 제3호> 서약서
- <서식 제4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서식 제5호> 대표자 선임계
- <서식 제6호>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 <서식 제7호> 사용인감계
- <서식 제8호>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서식 제9호>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
- <서식 제10호> 설계설명서

2. 첨부

- [첨부 1]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등 서식(1호~10호).hwp
- [첨부 2]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서식.hwp

3. 참고자료(참가신청자 개별 제공)

- 현황측량도 등
- 하동드림스테이션, 하동청년타운 개요 및 도면
- 기타자료 등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공 동 응 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이 시행하는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자란에 기재함</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4.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하동군수 귀하</p>			

[서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 1. 업 체 명 :
- 2. 소 재 지 :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대표자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대표자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날인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서 약 서

당사는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설계공모 규정에서 정한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하동군에서 설계공모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input type="radio"/> 대표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input type="radio"/>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당사는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4. . .

<input type="radio"/> 대표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input type="radio"/>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서식 5]

대표자선임계

본인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 에게 위임합니다.

※ 첨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1부.

2024. .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 대표 ○○○ (인)

하동군수 귀하

[서식 6]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 접수번호		(미 기재)		
대표자	업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E-mail	
공동 응모자 (해당시)	업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		E-mail	

하동군에서 주관하는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 .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 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서식 8]

심 사 후 입 상 작 확 인 용

설계공모 명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
설계사무소 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건축사 날인(공동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
응모작품 사진 붙임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

안 건 명 :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

기피 및 회피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사유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설명서

-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24.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성 명 : (인)

하동군수 귀하

건축개념

[사업명 :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설계소요 400~1,000자 내외)
자유표현

설계개요

[사업명 :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구분		설계내용	비고	
설계개요	명칭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지하층	㎡	
		지상층	㎡	
	주요구조			
	주용도			
	건폐율	%	법정 : % 이하	
	용적율	%	법정 : % 이하	
	층수	지상 층		
	최고높이	m		
	승강기	대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차개요	계	대	법정 : 대	
	육내주차	대		
	육외주차	대		
조경개요	조경면적	㎡		
	법정조경면적	㎡		
오수처리시설				
기타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 필요시 칸 추가할수 있음

- 세부용도별 면적표 -

[사업명 :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구 분	용 도	면 적(㎡)	비 고
소 계	합 계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 관계법규 검토서 -

[사업명 :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구 분	법 규 명 및 조 항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

[사업명 :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 단위 : 천 원]

공사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구성비	비고
건축공사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소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공사						
○○공사						
○○공사						
합계						
제경비						
부가가치세						
총계						